### <가정통신문>



## 가 정 통 신

2023년 신입생 예비소집

2022학년도 웃터골〈제 184호 〉

**№** 114191213 경기도 시흥시 은행고길 18 ☎(교무실)070-7096-7707 (행정실)070-7096-7704

예비 학부모님께

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

저희 웃터골초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금번 2023학년도 예비소집일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해당하는 일시에 꼭 자녀를 동반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※ 해당 기간 중 한번만 오시면 됩니다.)

#### 1. 예비소집 일정

예비소집일	발행번호	시간	장소
1차 2022.12.29.(목)	1~60	14:00~14:30	4층 강당
	61~120	14:30~15:00	4층 강당
	121번 이후	15:00~15:30	4층 강당
	시간내 미방문자	15:30~20:00	2층 교무실
비고	※ 코로나 확산 우려로 인하여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자 발행번호별 시간차 방문을 실시하오니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		
	※ 학생의 안전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니 학생과 함께 방문을 부탁드립니다.		
	1단계 명단확인(학생 건강확인)> 2단계 취학통지서 및 위장전입		
	관련 보호자 확인서 제출> 3단계 신입생 예비소집 자료 가져가기		
2차 2023.1.12.(월)	1차에 방문하지 못하신 분	10:00~1500	2층 교무실

※ 예비소집 마지막 날 많은 인원이 몰릴 수 있으니 가급적 사전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2. 방문시 유의사항

- 1. 아동의 소재 및 안전 확인을 위하여 꼭 **자녀분과 동행하여**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자녀분과 같이 지낼 친구들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는 일입니다. 꼭 협조해 주세요.)
- 2. 마스크 미착용 시 교내 출입이 불가합니다.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3. 학교 홈페이지(http://www.usturgol.es.kr) 및 문자를 통하여 변동사항을 공지하고 있습니다. 방문 전 꼭 변동사항이 있는 지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.
- 4. 자녀 혹은 학부모께서 코로나 (의심)증상이 있거나 자가격리 혹은 확진으로 내교가 불가능할 시 학교(070-7096-7706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3. 초등학교 취학통지서의 온라인 취학통지 서비스 안내

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의 온라인 취학통지 서비스를 함께 안내드리오니, 취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발급 서비스 신청 시
- 1) 신청사이트: **정부24(https://www.gov.kr)**
- 2) 신청기간: 2022. 12. 2.(금) ~ 2022. 12. 12.(월), 11일 간
- 3) 신청내용: 취학통지서 열람 및 발급(출력 및 pdf저장)
- 나. 발급 서비스 미신청 시
- 1) 방법: 현행과 같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편 또는 우편 안내
- 2) 기간: 2022. 12. 13.(화) ~ 2022. 12. 20.(일)

### 4. 위장전입을 통한 입학 및 전학 금지 안내

- ◆ 위장전입이란?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.
- ◆ 위장전입을 통한 입학 및 전학은 특정 학교의 학급의 과소 또는 과밀화를 유발하며, 학교 간 균형 발전을 저해시키고, 타인의 정상적인 입학 및 전학까지 방해함으로써 사회적 불 신감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, 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법 사항입니다.
- ◆ 위장전입을 통한 전학은 학생의 심리적·교육적 성장에 악영 향을 끼칩니다.
- ◆ 위장전입을 통해 전학을 할 경우, 원적교로 돌아가야 하며, 공 문서상 기록에도 학생의 위장전입 사항이 남게 됩니다.
- ◆ 원적교로 되돌아갈 경우,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,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등에 큰 문제가 생겨 성장기 아동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.
- ◆ 또한, 『주민등록법』제37조(벌칙)에 의거하여 <u>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</u>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.
- ※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관련 보호자 확인서를 예비소집일에 제출해 주세요.

2022년 12월 29일

웃 터 골 초 등 학 교 장

#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관련 보호자 확인서

전·입학(취학)과 관련하여 통학구역 위반(학구 위반) 및 위장전입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교육활동 지원이 어렵게 되며, 학교 간 균형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니, 학교 교육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<u>통학구역</u> 위반(학구위반) 및 위장전입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위장전입으로 <u>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</u>(주민등록 이중신고,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)한 경우, <u>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</u>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,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주민등록법】 제37조(벌칙)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"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"

위 내용에 대해 ( )학생의 보호자인 ( )는

학교로부터 위 내용을 고지받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위장전입 등의 위법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책임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 년 월 일

학생명:

보호자명: (서명)

웃터골초등학교장 귀하

### <학부모 안내사항>

- 1) (취학의무)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미취학 시, 초·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해 해당 보호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2) (조기입학·입학연기) 조기입학·입학연기 희망 시, <u>12.31까지</u> 해당 <u>주민센터(행정복</u> <u>지센터)</u>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- ※ 별도 심의과정 없이 신청과 동시에 처리되며, 사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 택 필요
- 3) (취학유예·면제) 입학 예정 아동이 질병·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이 불가능할 경우, <u>입학 예정인 해의 1~2월</u> 중 <u>취학 예정 학교</u>로 취학유예·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※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, 학교에 사전 문의 및 학교 의 안내에 따른 증빙자료 준비·절차 진행 필요
- 4) (예비소집 참석)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- ※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시,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 요망
- 5) (통학구역 변경 시)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, 최초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 학교로 사전 연락한 후 전입한 주민센터(행복복지센터)에서 취학통 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취학 대상 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6) (연락처 변경 시) 취학통지서 수령 후 예비소집일 전에 보호자 연락처 변경 시, 변경된 연락처를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.
- 7) (취학통지서 분실) 본 취학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서 취학통지서를 재발급 받아 예비소집일에 지참하여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.
- 8) (위장전입 금지)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하여 특정 학교 입학 시, 관련 법에 따라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